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 선고 2019가단114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현민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12. 접수 제32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C를 경영하던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표1. 보증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D	85,000,000	2005. 6. 2.	2019. 5. 17.	기업통장 대출	E은행 신평동지점

<표2. 대출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D	85,000,000	E은행 신평동지점	2005. 6. 7.	100,000,000

(2)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B는 2019. 5. 22.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E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원)	이자(원)	구상금합계(원)
1	D	2019. 9. 25.	79,887,895	1,199,443	81,087,338
합계			79,887,895	1,199,443	81,087,338

(2) 한편 B는 2017. 10. 11.경 C에 관한 세무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여 F의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었고, 2018. 8.경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2018. 11.경 자동차세를 각 체납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9. 25.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4)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512,150원이고, 원고가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411,961원이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계약

(1) B는 2018. 6. 11.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32031호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B는 1984. 4. 23.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G(1985년생), H(1987년생)을 두었다. B와 피고는 2018. 4. 27.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18. 6. 4.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갑 10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하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F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2019. 9. 25.에 비로소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신용보증약정일인 2005. 6. 2.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B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일 전인 2017. 10. 11.경 C에 관한 세무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여 F의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었으며, 재산분할계약 이후 2018. 8.경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2018. 11.경 자동차세를 각 체납하였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2019. 5.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19. 9. 25.에 E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의 구상금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기간 내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주장

(가)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혼인생활 동안의 피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에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또한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3) 재산분할의 대상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10,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의이혼 신고일인 2018. 6. 4.경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B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다음과 같고, 순재산의 합계는 -532,091원이다.

① B 보유의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32,000,000원

② B 보유의 소극재산 :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98,019,572원, I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7,540,800원, J에 대한 대출금채무 5,077,000원 등 채무 합계 140,637,372원

③ 피고 보유의 적극재산 : K은행 예금채권 8,105,281원(그 외에 예금채권은 협의이혼신고 당시의 예금채권 잔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 보유의 소극재산 : 없음

⑤ 피고와 B의 협의이혼 당시의 순재산의 합계 : -532,091원

(4)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3호증의 1 내지 을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와 피고의 혼인기간,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게 된 사정, 혼인기간 중 B는 C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고, 피고는 L 주식회사, M 의원, 주식회사 N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득을 얻은 점, 기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면 B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비율은 B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재산분할은 종국적으로 B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이행에 따른 결과 B는 그 명의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계 140,637,372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게 된 반면, 피고는 채무는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 140,105,280원 전부(2018.

6. 경을 기준으로 한 예금채권의 잔액을 특정할 수 없어 K은행 예금채권 8,105,281원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그 외에 K은행의 다른 계좌의 예금채권, O조합, P조합 계좌의 예금채권을 더하면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140,105,280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를 취득하였으므로, B가 피고에게 13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B의 사해의사 등

결국 B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존재를 몰랐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시점, B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 사유와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¹⁾.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하구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있는

AE아파트 AF동

[도로명주소] 부산 사하구 AG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2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AH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AI호 59.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 사하구 Q | 대 65㎡ |
| 2. 부산 사하구 R | 대 17㎡ |
| 3. 부산 사하구 S | 대 734㎡ |
| 4. 부산 사하구 T | 대 483㎡ |
| 5. 부산 사하구 U | 대 41㎡ |

- 6. 부산 사하구 V 대 893m²
- 7. 부산 사하구 W 대 881m²
- 8. 부산 사하구 X 대 358m²
- 9. 부산 사하구 Y 대 1m²
- 10. 부산 사하구 Z 대 54m²
- 11. 부산 사하구 AA 대 1735m²
- 12. 부산 사하구 AB 대 222m²
- 13. 부산 사하구 AC 대 7476m²
- 14. 부산 사하구 AD 대 833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3793000분의 19681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20나45100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